



Creating the future, together Korean Tax Newsletter

2023 년 2 월

• 예규·판례

가.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전시부스의 개선에 관한 발명이므로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를 발명한 자는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해당 발명이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2 인 5874, 2023.02.16)**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2005.7.4. 개업 이래 서비스업(광고디자인)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aaa 는 최대주주로서 직계존비속 등과 함께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함
- 대표이사 aaa 는 2018 년 중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특허권 2 건(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2020.12.17. 청구법인에게 000 원(감정가액, 이하 “쟁점금

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함

- 000 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종합감사 결과, 대표이사 aaa 가 자신이 근무 중인 청구법인에 양도한 쟁점특허권의 금액을 근로소득(직무발명보상금)으로 경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4. 청구법인에게 2020 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 원을 경정. 고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8.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aaa 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 「소득세법」 제 20 조 제 1 항은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재직 중 지급받는 「발명진흥법」 제 2 조 제 2 호의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 제 2 조 제 2 호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그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전시부스의 개선에 관한 발명이므로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점
- ✓ 이를 발명한 aaa 는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해당 발명이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원재료 성격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외국법인의 축적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22 중 2207, 2023.02.08)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2016~2021 사업연도 기간 동안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 AAA(이하 "스위스법인"이라 한다)로부터 000 시스템으로 이하 "쟁점소프트

웨어"라 한다)를 도입하면서 지급한 대가에 대해 「법인세법」 제 93 조 제 8 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 12 조에 따른 국외거래처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함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스위스법인에게 쟁점소프트웨어의 도입에 따라 지급한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원재료 등의 매입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 93 조 제 5 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 7 조에 따른 사업소득이므로 동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1.8.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해 2021.12.9. 거부처분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6.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소프트웨어의 도입에 따라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기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 ✓ 쟁점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계약이 원재료의 구입이 아닌 라이선스 및 서비스 계약으로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를 지급하고 수수료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데, 회계처리 계정의 항목이 항상 그 실질을 그대로 표상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성격을 단순히 제품의 수입, 판매 대금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사정으로 보기에 충분한바(서울고등법원 2020.12.23. 선고 2020 누 30681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원재료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스위스법인의 축적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 ✓ 청구법인의 쟁점소프트웨어 도입 및 이용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생산대상 셋톱박스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사양을 스위스법인에 전달하면 스위스법인은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등을 조정하여 다시 청구법인에 전달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기초로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와 통합하여 셋톱박스 구동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인증용 셋톱박스를 제작하여 스위스법인에 인증을 신청하는 인증단계가 있음이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이 양산단계에서 STB 에 탑재된 개별 페어링 키당 일정액(USD 000)을 쟁점소프트웨어 대가로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인증단계는 쟁점소프트웨어 도입 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절차로서 인증단계와 양산

단계를 분리하여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이 생산하고자 하는 STB 모델에 대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사양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맞추어 쟁점소프트웨어가 청구법인의 STB 내 하드웨어 등과 호환될 수 있게끔 하는 고객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쟁점소프트웨어가 청구법인만을 위하여 특별히 주문제작 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다.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서면-2021-원천-5592, 2023.02.06)

■ 질의

(사실관계)

- 질의인은 외국계 의료장비 회사에 '00 년 입사하여 '00 년에 이사로 진급하였고, '00.0 월 중 회사의 권고로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직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며 질의인을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보아 「소득세법」제 22 조 제 3 항의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하였으며,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함
- 질의인은 이사 직급으로 재직할 것은 사실이나, 부서장이었을 뿐 경영활동에 참여할 위치가 아니었으며 퇴사 후 임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기에 법인세법상 임원이 아니라는 입장

(질의내용)

질의인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여 쟁점 퇴직위로금이 「소득세법」제 22 조 제 3 항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으로 그 한도초과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 40 조 제 1 항 각 호의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제 22 조 제 3 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라.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 (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이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 3 조 제 3 호에 해당하는 자임(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2023.02.09)

■ 질의

(질의내용)

(질의 1)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예탁증권(KDR)을 코스닥 상장 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지 못하고 임의 매각 형태(일본 회사법에 따른 주식등매도청구)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 여부

<제 1 안>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

<제 2 안>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2) (질의 1 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 후 증권예탁증권 (KDR)을 보유하던 내국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증권 시장을 통하여 매매하지 못하고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의무자

<제 1 안> 증권거래세법 제 3 조 제 3 호에 따른 양도자 또는 양수인

<제 2 안> 증권거래세법 제 3 조 제 2 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 회신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 (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이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 1 조의 2 제

4 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 세
법」 제 3 조제 3 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Back to top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23.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To no longer receive emails about this topic please send a return email to the sender with the word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